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2000	사회개발비	4,196,614	4,245,459	△48,845	
2200	보건및생활환경개선	4,196,614	4,245,459	△48,845	
2210	보건	4,196,614	4,245,459	△48,845	
2211	원미구보건소운영	4,196,614	4,245,459	△48,845	
100	경상예산	823,200	805,825	17,375	[국 500 도 0 시 16,875 분 0]
110	인건비	512,264	496,149	16,115	[국 500 도 0 시 15,615 분 0]
	101 인건비	512,264	496,149	16,115	
		108,655	95,486	13,169	02 수당 ◎초과근무수당 13,169 ●5급 경정(9,622원X4명X28시간X12월)-기정(9,471원X4명X25시간X12월) = 1,567 ●6급 경정(8,165원X8명X28시간X12월)-기정(8,036원X8명X25시간X12월) = 2,662 ●7급 경정(7,325원X20명X28시간X12월)-기정(7,210원X20명X25시간X12시간) = 5,964 ●8급 경정(6,564원X7명X28시간X12월)-기정(6,461원X7명X25시간X12월) = 1,871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●9급 경정(5,887원X1명X28시간X12월)-기정(5,794원X1명X25시간X12월) = 240
					●기능7급 경정(7,325원X2명X28시간X12월)-기정(7,210원X2명X25시간X12월) = 597
					●기능8급 경정(6,564원X1명X28시간X12월)-기정(6,461원X1명X25시간X12월) = 268
		368,079	365,133	2,946	10 일시사역인부임 ◎운동처방실 운영 보조임 경정(13,000,000원)-기정(12,000,000원) = 1,0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6,500 - 6,000 = 500 (시) 6,500 - 6,000 = 500 ◎국민연금지방자치단체부담금 경정(4,878,000원)-기정(3,796,000원) = 1,082 ◎건강보험지방자치단체부담금 경정(2,878,000원)-기정(2,014,000원) = 864
120	경상적경비	310,936	309,676	1,260	
	201 일반운영비	249,896	248,636	1,260	
		248,896	247,636	1,260	01 일반운영비 ◎건강도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= 700 ◎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= 56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200 사업예산	3,373,414	3,439,634	△66,220	
	210 보조사업	3,066,189	3,105,767	△39,578	
	201 일반운영비	101,981	92,093	9,888	
		101,981	92,093	9,888	01 일반운영비 ◎금연클리닉운영 경정(14,600,000원)-기정(4,600,000원) = 10,0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7,300 - 2,300 = 5,000 (시) 7,300 - 2,300 = 5,000 ◎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경정(2,824,000원)-기정(2,516,000원) = 308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1,412 - 1,258 = 154 (시) 1,412 - 1,258 = 154 ◎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 홍보비 경정(0원)-기정(420,000원) = △42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0 - 210 = △210 (시) 0 - 210 = △210
	301 일반보상금	101,596	112,696	△11,100	
		5,000	6,000	△1,000	10 행사실비보상금 ◎건강걷기교실 자원봉사자 관리비 경정(0원)-기정(1,000,000원) = △1,000

과 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[경정] [기정] [증감] (국) 0 - 500 = △500 (시) 0 - 500 = △500
		92,140	102,240	△10,100	12 기타보상금 ◎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 환아관리 경정(86,500,000원)-기정(96,600,000원) = △10,100 [경정] [기정] [증감] (국) 34,600 - 38,640 = △4,040 (도) 25,950 - 28,980 = △3,030 (시) 25,950 - 28,980 = △3,030
	307 민간이전	2,824,120	2,862,486	△38,366	
		2,022,242	1,991,028	31,214	01 의료및구료비 ◎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경정(187,000,000원)-기정(117,500,000원) = 69,500 [경정] [기정] [증감] (국) 149,600 - 94,000 = 55,600 (시) 37,400 - 23,500 = 13,900 ◎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경정(110,000,000원)-기정(150,000,000원) = △40,000 [경정] [기정] [증감] (국) 44,000 - 60,000 = △16,000 (도) 33,000 - 45,000 = △12,000 (시) 33,000 - 45,000 = △12,000 ◎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경정(157,000,000원)-기정(145,286,000원) = 11,714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도) 78,500 - 72,643 = 5,857 (시) 78,500 - 72,643 = 5,857 ◎금연클리닉치료비 경정(134,000,000원)-기정(144,000,000원) = △10,0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67,000 - 72,000 = △5,000 (시) 67,000 - 72,000 = △5,000
		672,060	741,640	△69,580	05 민간위탁금 ◎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경정(0원)-기정(70,000,000원) = △70,0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0 - 56,000 = △56,000 (시) 0 - 14,000 = △14,000 ◎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 홍보비 = 420 (국) 210 (시) 210
220	자체사업	307,225	333,867	△26,642	
	307 민간이전	302,395	329,767	△27,372	
		243,926	259,926	△16,000	01 의료및구료비 ◎한방약품비 = △12,000 ●소사구 경정(0원)-기정(6,000,000원) = △6,000 ●오정구 경정(0원)-기정(6,000,000원) = △6,00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◎순회진료약품비 △4,000 ●원미구 경정(0원)-기정(4,000,000원) = △4,000
		58,469	69,841	△11,372	05 민간위탁금 ◎한방진료업무대행 △9,549 ●한의사 경정(39,500,000원)-기정(49,049,000원) = △9,549 ◎한방진료업무대행자 퇴직금 △1,823 ●한의사 경정(2,265,000원)-기정(4,088,000원) = △1,823
	405 자산취득비	4,830	4,100	730	
		4,830	4,100	730	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730,000원X1대 = 730 ◎문서세단기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부 서 합 계		4,519,426	4,568,271	-48,845	